

『서울대학교 法學』 발행규정

2006. 2. 28. 제정
2008. 6. 17. 일부 개정
2016. 11. 25. 개정
2020. 6. 10. 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『서울대학교 법학』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법학지의 간행)

- ① 법학지는 연 4회 발간한다.
- ② 법학지의 발간일자는 매년 3월 31일, 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31일로 한다.
- ③ 법학지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접수일(2***년 *월 *일), 심사완료일(2***년 *월 *일), 게재확정일(2***년 *월 *일)을 기재한다. <2008. 6. 17. 신설>
- ④ 법학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.

제3조 (별쇄본 및 전자출판)

- ①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법학지 2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.
-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.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부담 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.
- ③ 법학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. 전자 출판의 경우에도 원문과 초록을 함께 제공한다.
- ④ 삭제 <2020. 6. 10. 개정>

제4조 (저작권 등)

- ①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기고자에게 있다.
- ② 기고자는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게재된 논문 등을 복제·배포·전송할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며, 이에 관하여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.
<2020. 6. 10. 본조 신설>

제5조 (개정)

본 발행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